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1050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기(종합)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불명, 폐문부재,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　　목: 2026년 10월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(처분사전)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: 55너06**(박*수,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6길)등 26대(붙임 참조)
3. 공고기간: 2026.10.30. ~ 2026.11.14.(15일간)
4. 공고내용

귀하(사)의 자동차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(점검 및 정비 명령 등)에 따른 **정기(종합)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**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하니 해당 차량을 **2026.11.20.까지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(종합)검사**를 받으시기 바라며, **미이행시 2026.12.01.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됨**을 알려드립니다.

※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.

※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4. 문의처: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(052-209-3705)

2026. 10. 30.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